



No. 2022-241
품목 아이스크림(Ice Cream)
HS CODE 2105.00
국가 필리핀(Philippines)



C.O.N.T.E.N.T.S

I	시장 현황 및 전망	3
	1. 시장 규모 2. 수출입 통계	
II	트렌드	10
	1. 소비 트렌드	
III	유통	15
	1. 유통구조 2. 주요 유통채널 분석	
IV	통관 및 제도	22
	1. 통관 및 검역 2. 인증 3. 라벨링 4. 위생요건	
V	시사점	41
	1. 수출 확대 방안	

I

시장 현황 및 전망



01 시장 규모

필리핀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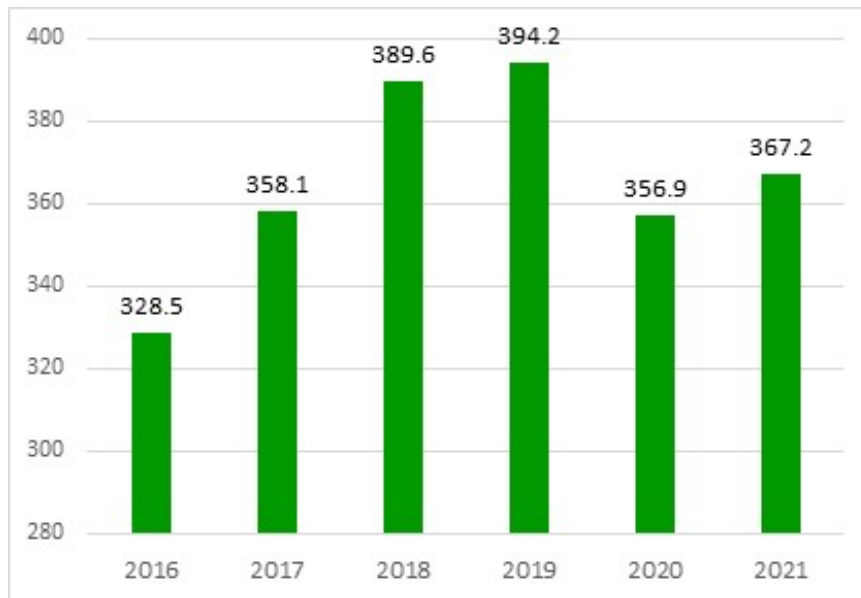
2021년 필리핀 냉동 디저트 제품 시장 규모는 약 3억 6,720만 달러를 기록함
 -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5% 감소하며 3억 5,69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2021년 회복세로 돌아섬. 최근 5년간(2016-2021년) 연평균 성장률은 2.3%를 기록함



표 1

필리핀 아이스크림 및 냉동 디저트 시장 규모 추이(2016-2021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필리핀 냉동 디저트는 크게 아이스크림과 프로즌 요구르트로 분류되며, 아이스크림은 다시 테이크아웃 아이스크림¹⁾과 임펄스 아이스크림²⁾으로 분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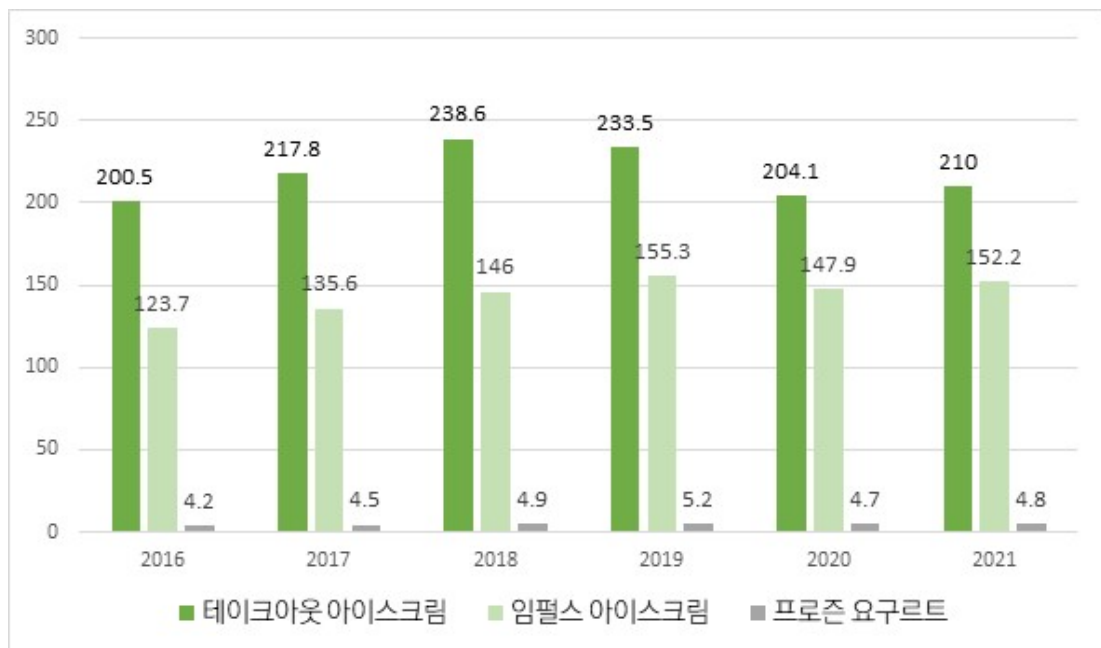
- 최근 6년간(2016-2021년) 필리핀 냉동 디저트 시장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아이스크림으로, 98%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함
- 아이스크림 중에서는 테이크아웃 아이스크림이 임펄스 아이스크림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21년 기준, 테이크아웃 아이스크림은 2억 1,000만 달러, 임펄스 아이스크림은 1억 5,22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함



표 2

필리핀 냉동 디저트 시장 세부 유형별 매출 현황(2016-2021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표 3

필리핀 냉동 디저트 시장 세부 유형별 판매량(2017-2021년)

(단위: 백만 리터, %)

유형	2017	2018	2019	2020	2021
테이크아웃 아이스크림	78.3	83.4	79.6	65.7	66.1
임펄스 아이스크림	25.7	26.5	27.1	24.8	24.7
프로즌 요구르트	0.9	1.0	1.0	0.7	0.7
포장되지 않은 아이스크림	1.1	1.1	1.2	0.5	0.5
전체	106.1	112.0	108.8	91.8	92.0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1) 큰 통에 담겨있어 집으로 가져가 나눠 먹는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가리킴

2) 스틱바, 콘, 컵 형태의 아이스크림으로 상점에서 구매 후 즉시 섭취가 가능한 작은 크기의 아이스크림을 가리킴

02 수출입 통계

조사 대상 품목의 HS CODE

조사 대상 품목의 HS CODE는 다음과 같음

HS CODE 2105

-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

HS CODE 2105.00

-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

국가별 HS CODE

- 글로벌: 2105.00
- 필리핀: 2105.00
- 한국: 2105.00

글로벌 아이스크림 수입 규모

2021년 글로벌 아이스크림(HS CODE 2105.00) 수입 규모는 52억 4,653만 8,000달러로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7.9% 증가함

- 2021년 독일은 4억 8,368만 3,000달러를 수입하여 전체 수입 규모의 약 9.2%를 차지함
- 이어서 영국(9.0%), 프랑스(6.5%), 벨기에(5.5%), 미국(5.0%)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필리핀은 40위 수입국으로 전체 수입 규모의 약 0.9%를 차지함



표 4

글로벌 아이스크림 수입 규모 추이(2017-2021년)

(단위: 천 달러, %)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성장률
글로벌	3,875,499	4,452,725	4,325,470	4,497,114	5,246,538	7.9
1 독일	366,459	456,277	424,566	422,713	483,683	7.2
2 영국	340,412	433,499	410,338	420,921	471,876	8.5
3 프랑스	230,683	261,193	277,112	285,283	341,422	10.3
4 벨기에	179,222	181,663	189,171	211,315	290,704	12.9
5 미국	66,903	86,847	83,905	139,281	262,423	40.7
40 필리핀	11,019	15,111	23,746	29,889	49,643	45.7
기타	2,680,801	3,018,135	2,916,632	2,987,712	3,346,787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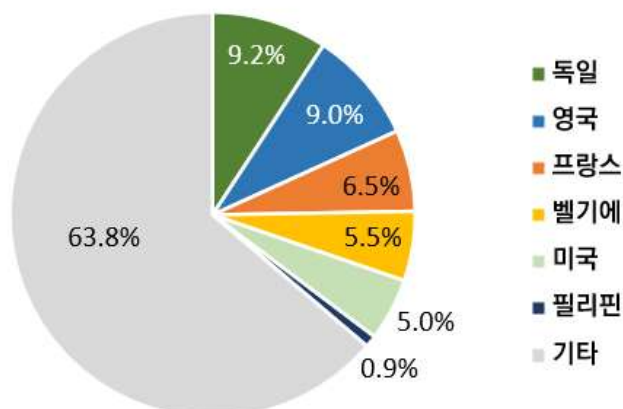
자료: ITC World Trademap



그림 1

글로벌 아이스크림 국가별 수입 비중 현황(2021년)

(단위: %)



자료: ITC World Trademap

필리핀 아이스크림 수입 규모

2021년 필리핀의 아이스크림(HS CODE 2105.00) 수입 규모는 對중국 수입액이 2,715만 5,000달러로 전체의 54.7%를 차지함. 이어서 인도네시아가 30.2%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수입 규모 1, 2위를 합치면 84.9%로,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아이스크림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2021년 對한국 수입 규모는 282만 5,000달러로 전체 수입 규모의 5.7%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수입국 중 3위를 기록함



표 5

필리핀 아이스크림 수입 규모 추이(2017-2021년)

(단위: 천 달러, %)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성장률
글로벌	11,019	15,111	23,746	29,889	49,643	45.7
1 중국	0	0	5,732	16,228	27,155	-
2 인도네시아	5,701	6,160	10,550	7,937	14,979	27.3
3 한국	961	1,445	1,841	1,692	2,825	30.9
4 태국	1,983	3,738	1,921	510	1,770	-2.8
5 미국	1,982	2,473	1,903	1,750	1,178	-12.2
기타	392	1,295	1,799	1,772	1,736	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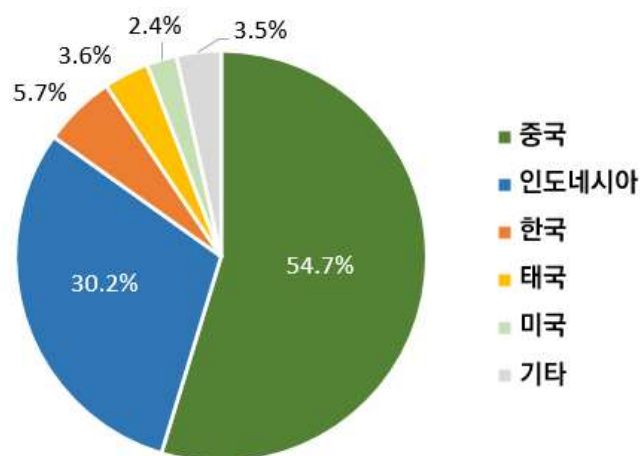
자료: ITC World Trademap



그림 2

필리핀 아이스크림 국가별 수입 비중 현황(2021년)

(단위: %)



자료: ITC World Trademap

한국 아이스크림 수출 규모

2021년 한국의 아이스크림(HS CODE 2105.00) 수출 규모는 7,242만 4,000달러를 기록함
-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11.9% 성장함

2021년 한국의 對필리핀 아이스크림 수출 규모는 776만 8,000달러를 기록함
-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성장률은 18.0%로 지속 성장세를 보임



표 6

한국의 對글로벌 및 對필리핀 아이스크림 수출 규모 추이(2017-2021년)

(단위: 천 달러, 톤,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성장률
對 글로벌	수출액 (YoY)	46,153	47,258	54,182	60,822	72,424	11.9
		3.5	2.4	14.7	12.0	19.4	-
對 필리핀	수출액 (YoY)	4,010	4,585	5,127	4,804	7,768	18.0
		-	14.3	11.8	-6.3	61.7	-

자료: K-stat

II

트렌드



01 소비 트렌드

아이스크림 소비 트렌드

1년 내내 무더운 필리핀은 식후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아이스크림을 선물하는 등, 아이스크림을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유통되는 아이스크림 제품의 종류와 브랜드, 맛이 매우 다양함

필리핀 냉동 디저트 시장의 기업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유니레버 그룹이 2021년 기준 전체 시장의 69.5%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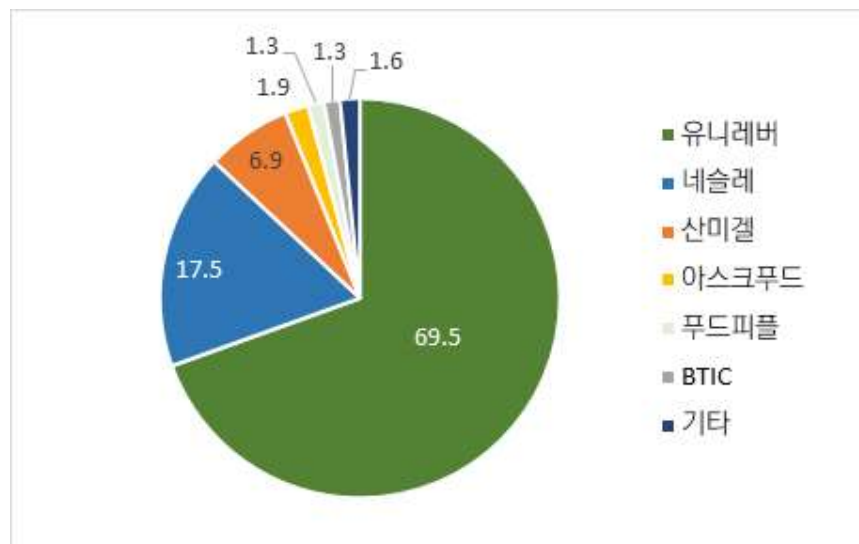
- 이어서 네슬레가 17.5%, 산미겔이 6.9%, 아스크푸드가 1.9%, 푸드피플과 BTIC가 각각 1.3%를 기록함



그림 3

필리핀 냉동 디저트 기업별 시장점유율(2021년)

(단위: %)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필리핀 냉동 디저트 시장은 다수의 글로벌 브랜드가 경쟁 중임.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아이스크림 브랜드는 가격이 저렴한 필리핀 브랜드 Selecta임

- Selecta는 유니레버 그룹 산하 브랜드로, 유제품부터 빙과류까지 생산하는 아이스크림의 범위가 넓고 가격이 타 브랜드에 비해 저렴한 것이 특징임
- Best Price에 따르면, Selecta의 'Super Thick Vanilla Ice Cream'은 필리핀에서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 1위를 차지함



표 7

필리핀에서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 Top3

브랜드	제품명	사진 및 가격
Selecta	Super Thick Vanilla Ice Cream	 230페소/1.4ℓ (약 5,500원)
Mad Marks	Homemade Ice Cream Bluebeary	 330페소/350ml (약 7,800원)
Selecta	Supreme Halo Halo	 165페소/1.3ℓ (약 4,000원)

자료: Best Price

필리핀 아이스크림 가운데 가장 대중적인 맛은 우베(ube)로, 필리핀에서 많이 생산되는 자주색 참마를 이용해 만듦. 필리핀에서는 우베를 이용해 잼, 케이크, 쿠키,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식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우베 맛 아이스크림은 흔히 '할로할로'라는 필리핀식 빙수에 얹어 먹음



그림 4

필리핀의 대중적인 디저트 할로할로(좌), Selecta의 할로할로 맛 아이스크림(우)



자료: 기업 홈페이지

빅데이터 분석

필리핀 내 웹 트래픽 수가 높은 lazada에서 아이스크림(ice cream)에 대한 분석을 진행

- 분석의 단계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분석순임
- 수집 항목은 제품 소개란(성분, 홍보 문구), 소비자 반응(리뷰)이며 총 수집 건수는 제품 24건, 소비자 반응 766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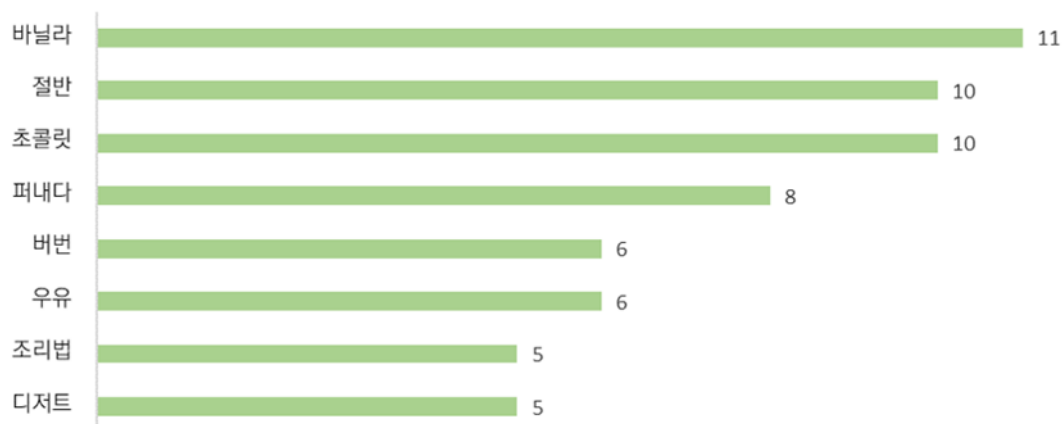
1. 제품 특성 주요 키워드 추출

아이스크림 제품 소개 출현 단어빈도는 제품과 직접적인 단어(과일, 과자 등)의 경우 제외함. 빈도는 바닐라 11건, 초콜릿 10건순으로 높았으며, 다른 주요 단어들은 퍼내다, 우유, 버번, 디저트, 조리법 등이 출현함. 키워드 추출 결과 다양한 맛들에 대해 검색되었음

표 7 제품 특성 출현단어 빈도

순위	출현단어	출현빈도
1	바닐라	11
2	초콜릿	10
3	절반	10
4	퍼내다	8
5	우유	6
6	버번	6
7	디저트	5
8	조리법	5

그림 5 제품 특성 출현단어 빈도



2. 동시출현단어 분석

연관단어 출현 빈도는 아래 표와 같으며 아이스크림 제품과 관련한 다양한 키워드가 도출됨. 우선 제품 소비 시 마다가스카르 버번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으며, 아이스크림에 대한 다양한 맛에 대해서도 나왔음. 또한,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키워드(크림 기계, 레시피, 얼음 등)와 아이스크림이 주로 소비(학교, 파티 선물용)되는 곳에 대한 정보도 확인 가능함



표 8

제품 특성 연관단어 출현 빈도

순위	연관단어	특징
1	마다가스카르 버번	6
2	바닐라 초콜릿	5
3	콘 시럽	5
4	크림 위스키	4
5	크림 기계	4
6	레시피 일	4
7	스트로베리 얼음	3
8	샌드위치 냉동	1
9	선물 학교	1
10	파티 디저트	1

3. 리뷰 출현 단어 분석

아이스크림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리뷰에선 크림메이커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게 나왔음. 또한 제품의 다양한 맛에 대한 단어와 함께 먹을 수 있는 디저트류의 식품(샌드위치, 쿠키, 주스 등)이 검색됨



표 9

소비자 반응 연관단어 키워드 빈도

순위	연관단어	빈도순위
1	크림 메이커	59
2	컵 믹스	24
3	크림 샌드위치	11
4	바닐라 맛	10
5	파인애플 주스	6
6	코코아 가루	4
7	초콜릿 맛	3
8	쿠키 부분	2

III

유통



01 유통구조

필리핀 아이스크림 유통채널


지원 기업 품목인 아이스크림의 유통채널을 분석함

아이스크림은 현대식 슈퍼마켓, 소규모 지역 식료품점, 하이퍼마켓, 편의점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

- 필리핀에서 아이스크림은 주로 현대식 슈퍼마켓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 2021년 기준, 슈퍼마켓의 유통 비중은 전체의 59.6%를 차지함
- 이어서 소규모 지역 식료품점(23.0%), 하이퍼마켓(12.6%), 편의점(3.8%), 현대식 점포 상인(0.6%), 식음료 담배 전문점(0.2%) 순임

아직까지는 아이스크림 유통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으나, 필리핀의 온라인 시장은 점차 성장하고 있음.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제한되면서 다수의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식료품 시장은 2020년 전년 대비 약 210% 증가한 1,626억 5,700만 필리핀 페소(약 3조 8,322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함

- 다양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온라인 식료품 시장의 성장세는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표 10 필리핀 아이스크림 유통경로별 점유율

(단위: %)


유통채널	2016년	2021년
슈퍼마켓	60.0	59.6
소규모 지역 식료품점	23.7	23.0
하이퍼마켓	11.6	12.6
편의점	3.8	3.8
점포 상인	0.7	0.6
식음료 담배 전문점	0.2	0.2
온라인	0	0.2
총계	100	100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02 주요 유통채널 분석

1)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1. 라자다(Lazada)

		개요 및 주요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설립된 동남아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6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음 - 2013년 안드로이드와 iOS 모바일 앱을 출시함 - 2016년 알리바바 그룹이 라자다의 지배지분을 인수, 지분을 83%로 모회사가 됨 -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LazEarth 캠페인을 시작함
유통업체명	라자다(Lazada)		
연락처	+971-42093377	본사 소재지	Lazada One 51 Bras Basah Rd #01-21. Singapore 189554
홈페이지	www.lazada.com.ph	매출액	7,172억 8,900만 위안 (모회사 알리바바의 2020년 통합 매출액)
입점 절차			

1)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등록(sellercenter.lazada.com.ph)

- 홈페이지 상단 'LazGlobal' 클릭 후 계정 생성
- 입점 절차는 제품 등록, 제품관리 포탈 가입 순으로 진행됨
- 홈페이지에서 공급 업체 규정 확인 가능(Lazada.com/suppliers-code-of-conduct)
- 등록 시 필요한 일반적 정보

- ① 공급자 정보: 공급 업체명, 연락처, 연락담당자, 전화번호 및 이메일, 은행 계좌번호 등
- ② 공급 제품 정보: 물류창고 주소, 제품 이름, 제품 사진, 판매 가격, 원산지 등
- ③ 참고자료: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등

2)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체

2. SM 마켓

		개요 및 주요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년 설립된 SM리테일의 자회사로,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파사이에 본사를 두고 있음 - 코로나19 기간 지역 농수산물 생산자 지원을 위한 Kasama ng SM(You are with SM) 캠페인을 진행함 - 퍼스널쇼퍼 프로그램³⁾을 필리핀 식료품 유통채널 중 처음으로 도입함 	
유통업체명	에스엠마켓(SM Market)		
연락처	+63-2-8-831-1212	본사 소재지	Metro Manila 파사이
홈페이지	smmarkets.ph	매출액	약 2,556억 9,400만 필리핀 페소
입점 절차			
<p>1) 유선 연락 또는 이메일을 통한 문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시 필요한 일반적 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급자 정보: 공급자 이름, 기업 이름, 주소, 연락 담당자,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② 공급 제품 정보: 브랜드 이름, 제품 사진, 판매 가격, 할인가, 권장 소비자가격 등 ③ 참고자료: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등 			

3) 온라인으로 주소, 연락처, 찾고 있는 제품을 적으면 퍼스널 쇼퍼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 카탈로그 등을 고객에게 발송해 제품을 추천하고, 원하는 제품을 고객에게 배송해주는 프로그램

3. 퓨어골드

		개요 및 주요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설립됨 - 하이퍼마켓/슈퍼마켓 브랜드인 퓨어골드 외에도 에스엔알(S&R) 할인점 및 외식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음. 이 외에도 드라마 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로서의 역할도 수행 중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쇼핑이 가능함 - 지캐시(GCash) 모바일 결제를 2019년부터 도입하였으며, 모바일 결제를 도입한 최초의 오프라인 유통채널임
			본사 소재지
유통업체명	퓨어골드(Puregold)	매출액 및 매장 수	약 27억 5,100만 달러 / 2020년 기준 241개
연락처	+63-2-524-4351		
홈페이지	www.puregold.com.ph	입점 절차	

1) 유선 연락 또는 이메일을 통한 문의

- 등록 시 필요한 일반적 정보
 - ① 공급자 정보: 공급자 이름, 기업 이름, 주소, 연락 담당자,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 ② 공급 제품 정보: 브랜드 이름, 제품 사진, 판매 가격, 할인가, 권장 소비자가격 등
 - ③ 참고자료: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등

2) 문의사항 및 연락처

- 이메일: customerservice@puregold.com.ph
- 페이스북: @puregold.shopping

4. 알파마트

		개요 및 주요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 인도네시아에 설립되어 현재 1만 7,00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한 알파마트 편의점이 본사로, 현재는 필리핀 대형 유통업체 에스엠리테일 산하 브랜드로 운영되고 있음 - 2021년 6월 기준 1,000번째 매장 개점 - 2020년 락다운 및 통금 등 여러 매출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매장 확대 전략을 밀고 나감 - 결제 편의를 위해 지캐시(GCash) 모바일 결제 수단을 확대함 - 한국산 제품으로는 라면과 주류를 취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수입식품을 취급함
			본사 소재지
유통업체명	알파마트(Alfamart)	매출액 및 매장 수	약 3억 2,900만 달러 / 1,012개
연락처	-		입점 절차
홈페이지	alfamart.com.ph		

1) 유선 연락 또는 이메일을 통한 문의

- 등록 시 필요한 일반적 정보

- ① 공급자 정보: 공급자 이름, 기업 이름, 주소, 연락 담당자,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 ② 공급 제품 정보: 브랜드 이름, 제품 사진, 판매 가격, 할인가, 권장 소비자가격 등
- ③ 참고자료: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등

- 공급 관련 필요 서류 목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alfamart.com.ph/be-an-alfamart-supplier)

2) 문의사항 및 연락처

- 이메일: mdsg.fresh@alfamart.com.ph
- 페이스북: @alfamartPHOfficial

5. 세븐일레븐



개요 및 주요 이슈

- 1982년 미국 텍사스의 세븐일레븐 본사로부터 필리핀 세븐일레븐 운영권을 취득하였고, 1984년 필리핀 첫 매장을 마닐라에 개점함
- 2021년 7월 기준 3,000번째 매장 개점
- 음식 배송 서비스 업체 푸드판다와 협업하여 즉석식품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개점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위해 힘쓰는 중임
- 이 외에도 ATM 기기를 설치하는 등 각종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한국산 제품(주류, 스낵류, 요구르트 등) 다수 취급

유통업체명	세븐일레븐(7-Eleven)	본사 소재지	7F Columbia Tower, Ortigas Ave., Mandaluyong City
연락처	+63-2-8-705-5200	매출액	약 8억 8,200만 달러
홈페이지	www.7-eleven.com.ph	입점 절차	

1) 유선 연락을 통한 문의

- 필리핀 세븐일레븐 본사 내의 마케팅 부서와 연락 후 카테고리 매니저와 연결
- 등록 시 필요한 일반적 정보
 - ① 공급자 정보: 공급자 이름, 기업 이름, 주소, 연락 담당자,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
 - ② 공급 제품 정보: 브랜드 이름, 제품 사진, 판매 가격, 할인가, 권장소비자가격 등
 - ③ 참고자료: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등

2) 문의사항 연락처

- 페이스북: @711philippines

IV

통관 및 제도



01 통관 및 검역

한국 수출 통관 절차

출항 전 보고

관세법상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함. 즉,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 및 서비스를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크게 정식 수출신고와 목록통관으로 구분됨

수출신고 서류 준비

- ① 정식 수출신고:
 - 목록통관절차 적용 대상 이외 물품의 수출
- ② 목록통관:
 - 개인용품, 무역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물품 또는 관세 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예외적인 물품의 수출 절차
 - 목록통관은 일반적인 특송 업체 또는 우체국 EMS를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절차임
 - 대상은 일반 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FOB 가격이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의미하며 카탈로그, 서류, 외교행낭 물품 등이 있음
- ③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정식 수출신고로, 전자상거래를 위해 간이한 방식으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음
 - FOB 200만 원 이하 물품의 수출목록을 신고서로 쉽게 변환하여 기존의 수출 신고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음
 - 해당 시스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로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여 반품 재수입 시 관세 면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세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한국 수출 통관 절차도



서류 구비

수출하기 전 구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음

- Invoice
- Packing List
- 원산지증명서(필요 시)
- 전략물자 자가판정서(필요 시)

수출신고 전 확인 사항

- 원산지증명서 발행 여부 검토: 거래 당사자 간 계약 시
- 환급 대상 여부: 중소기업의 경우 간이 정액환급 또는 개별환급 중 유리한 환급방식 검토 및 선정
- 수출 물품의 HS CODE 검토: 정확한 수출신고에 따른 간이정액환급, 원산지증명서 등을 위한 검토
- 물품의 소재지 확인: 수출신고 예정물품의 검사를 위해 수출신고 시점의 물품 소재지 확인 필요

수출신고

- 수출 화주로부터 전달받은 Invoice, Packing List를 기반으로 수출신고서 작성 및 관세청 UNI-PASS에 전자 접수
- 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 현품검사 또는 자동수리(Paper Less; PL)로 통지됨

세관 심사

- 위의 수출신고 접수 결과에 따라 세관의 심사가 있을 경우 서류심사, 현품검사가 이루어짐
- 서류심사의 경우 실제 신고내용과 수출신고 근거 서류 상 일치 여부를 확인함
 - 현품검사의 경우 수출신고 물품 외 은닉 물품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신고지 또는 적재지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선(기)적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 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함.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 기간 연장이 가능함

필리핀 통관 절차

개요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동식물 위생법 및 식품안전법을 준수해야 하며, 자국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은 수입 불가

- 수출 전 현지 수입업체는 수입면허(CAS)를 취득해야 함
 - 농축산식품 수입 시 위생/검역증명서(SPSIC)를 발급받아야 하며, 가공식품은 사전에 필리핀 식약청에 등록(CRP)되어야 함
- 단일통관창구(NSW)를 통해 수입 신고하며 제반 서류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일괄 제출 가능
- 정식통관과 약식통관
 - 과세가격 2,000페소 이상 여부 및 개인·상업적 용도 구분에 따라 정식(Form Entry) 및 약식(Inform Entry)으로 구분하여 신고함. 약식통관은 개인 배송에 한하며, 이삿짐으로 분류되어 까다로운 절차 없이 통관되나 선박 일정 등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배송기간이 길어짐. 또한, 물류업체가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고가품이더라도 보상받기가 어려움

수입 통관 절차도



수입 통관 절차

수입 신고 전 준비

- 1)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 확인
 - 수입자는 필리핀산업부(DTI)의 홈페이지를 통해 필리핀의 수입통관절차 및 규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수입금지 품목의 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필리핀에서의 수입통관은 수입허가 품목, 수입제한 품목, 수입금지 품목으로 분류되어 이루어져 있음
 - 해당 수입 품목의 수입 규제/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 규제 품목일 경우 해당 정부 기관의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 2) 수입면허(Customs Accreditation Secretariat, CAS) 취득
 - 수입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입자는 필리핀 국세국의 고객등록 시스템 (Client Profile Registration System, CPRS)에 기업정보를 등록한 후 수입면허(CAS)를 우선적으로 취득해야 함
 - 일반적으로 수입면허(CAS)의 취득은 현지 업체 및 브로커를 통해 진행이 됨
- 3) 위생증명서 발급
 - 가공식품은 필리핀 세관의 성분 및 제조시설에 관한 위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수출자는 수출 전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4)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 규제 대상 품목 여부 확인
 -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으로 물품 수출 전, 해당 품목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 규제 대상 품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덤핑방지관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수입자는 통관을 위해 예상치 못했던 높은 세금을 내야 하거나, 현지 수입상이 수입을 거절할 경우 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송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함

수입 신고

1) 단일 통관 창구(National Single Window, NSW)를 통한 신고

수입자는 필리핀의 통관 관련 정부 부처가 연계된 단일 통관 창구(National Single Window, NSW) 사이트를 통해 수입 신고를 실시하고 수입통관 서류 및 요건을 온라인으로 일괄 제출할 수 있으며, 세관 시스템에 수입화물 정보를 입력한 후 출력하여 현장에 접수하여 세관에 수입 통관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됨

수입 신고
시
제출 서류

수입신고서

- 수입신고서는 수입자, 화물인수자(consignee), 어음 소유자(holder of the bill)에 의해 서명되어야 하며, 서명은 개인 또는 회사, 기업의 책임자 또는 허가를 받은 통관 대행업자(customs broker)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

- 수입면허(CAS)
- 선하증권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화물운송장
- 원산지 증명서 및 품목별 인증(필요 시)
- 수입신고서
- 위생증명서

추가
제출 서류

수입통관 시 필수 제출 서류 이외에도 공공보건, 안전, 국가안보, 국제 협약 준수 및 지역산업 보호를 위해 추가 서류(Supporting Documentation)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음. 식품류의 경우 동물성 제품과 식물성 제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함

동물 제품

- 수의학 증명서
- 멸종 위기종에 대한 CITES수입 허가
- 제품 등록증(CPR)

식물 및 식물제품

- 식물 및 식물제품 수입 허가증
- 식물 및 식물제품에서 파생된 형태 또는 GMO유전자 변형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은 AO2002에 따라 허가 통제 대상임
- 식물위생증명서

심사 및 검사

수입될 물품은 품목분류(HS Code)에 따라 금지(Banned, Red lane), 검사 완화(Liberalized, Green lane), 관련 국가기관에 의한 규제(Regulated)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관세국(Bureau of Customs)은 심사 및 검사 절차 수행

Green Lane(GL)의 경우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Super Green Lane(SGL)제도를 두어 검사 생략 및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RL의 경우 세관 공무원의 현물 검사가 이루어지며 지정된 검사장소에서 물품의 서류와의 일치 여부, 라벨링 준수 여부 등 검사 절차 이행

구분	업체 분류기준	통관 진행방식
SGL	국가공인 우수인증 보유업체	화물 도착 전 통관 신고
GL	수입 이력이 준수한 업체	화물 도착 전 통관 신고 사후 관세청 회계 조사
YL	일반 업체	화물 도착 전 통관 신고 서류 심사 사후 관세청 회계 조사
RL	신규업체 / 수입 이력 불량업체	화물 도착 전 통관 신고 서류 및 실물 검사 사후 관세청 회계 조사

관세 납부
및
신고 수리

1) 세금, 관세 및 기타요금 부과

- 필리핀 세관은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세관 검사(Customs Inspection), 관세 분류(Tariff Classification), 관세 평가(Appraisal) 등을 진행하며, 수입에 따르는 각종 세금, 관세 및 기타 요금을 부과함
- 세관원은 모든 합리적이고 적법한 방법을 동원하여 물품의 가격이나 가치를 평가하며, 송장, 선서진술서, 제조원 등의 보고서 등을 조사함

2) 과세가격 결정

필리핀의 과세가격은 거래 가격을 기초한 국내 인도 가격(FOB 기준)에 의해 결정되며 수입 물품에는 관세와 더불어 부가가치세(12%), 개별소비세(excise tax) 등이 부과됨. 개별소비세의 경우 주류와 담배 등이 해당됨

3) 관세 납부 확인 후 신고 수리

- 수입자는 수입하기 전에 수입신고서를 공인은행(AAB)에 제출해야 하며 세관을 통해 부과된 세금을 동 은행에 제출해야 함
- 필리핀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은 세관에 등록된 수입자 거래 은행을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함
- 세관원은 관세에 상응하는 담보(국내 선하증권, 은행지불보증, 채권 등)나 관세의 납부를 확인한 후 신고를 수리함

4) 신속한 운송을 위한 현금 보증 요구

- 세관원은 검사받지 않은 물품의 경우 신속하고 빠른 운송을 위해 현금 보증으로 국내 선하증권, 은행 지불 보증, 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은 세금·관세 등 기타 지불 요금의 100%임
- 현금 보증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 세금, 관세, 다른 지불 요금 등이 지급될 때까지 물품 운송이 보류됨
- 불법 수입 물품은 국고로 귀속되고 그 물품의 관세, 창고비, 적하비 등의 기타 부대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함

물품 반출

수입 신고 수리 및 관세 납부(담보제공)가 이루어진 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서 즉시 반출이 가능하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 물품 검사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혹은 납부 기한 내에 관세 납부 또는 보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반출이 불가능함

제한 또는 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닌 경우 세관은 신고서의 항목이 확인되거나 혹은 확인될 필요가 없을 시 접수 직후 바로 통관함

02 인증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등록(필수)

1. 개요

필리핀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식품관리 시스템 확립을 위해 등록제도를 마련함. 모든 가공식품은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 등록해야 하며, 사전에 수입면허(Customs Accreditation Secretariat, CAS)를 취득한 수입업체만이 해당 절차의 진행이 가능함

필리핀에 식품을 수입, 유통하기 위해서는 영업허가 및 상품등록이 필수로 요구되며, 수입업체가 식품의약품청에서 영업허가증(License to Operate, LTO)을 발급받은 후 수입업자는 상품등록증(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함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해당 물품의 수입 적합 여부는 수입서비스국(Bureau of Import Services, BIS)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함

2. 대상 품목

가공식품 전반에 대해 적용되며 가공식품을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함

1유형(저위험)	2유형(중·고위험)
제빵, 알코올 성분이 없는 음료, 캔디, 제과, 코코아 관련 제품, 커피, 티 및 크림, 조미료, 소스, 젤라틴, 디저트, 낙농품, 드레싱, 밀가루, 수산물, 과일, 채소류 및 버섯류, 면류, 파스타, 견과류, 오일, 쇼트닝, 스낵, 시리얼, 설탕 등	알코올 음료, 식품첨가제, 차류(허브), 생수, 유아 및 영아용 식품, 특수 식이요법 식품, 유전자 변형 식품, 필리핀에서 흔하지 않은 재료로 만든 식품

3. 인증 절차

1. 기존 CFRR(Center for Food Regulation and Research, 식품 규제 및 연구 센터) 사용자 계정이 없는 경우, 전자 등록 시스템(E-registration system)을 통해 FDA 사용자 계정을 발급



2. 가공 식품 유형에 따라 FDA Circular No. 2020-003 (ANNEX D)에서 규정한 필요서류를 FDA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상품등록증 (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 신청



3. 필리핀 식약청은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 된 서류에 대해 사전평가(Pre-assessment) 진행



4. 사전 평가를 통해 요구되는 문서의 제출이 완료되었을 경우, 시스템 생성 이메일이 전송되며, FDA에 오프라인 납부 또는 BancNet 온라인 결제를 진행하도록 지분이 게시됨



5. 검토를 통해 신청이 승인되었을 경우, 상품등록증(CPR)이 첨부된 시스템 생성 이메일이 발송됨

4. 제출 서류

(1) 상품등록증(CPR)

- 수입업체 유통업체의 신청서
- 평가표(Assessment Slip)
- 제품 리스트
- 공증된 진술서(Affidavit of Undertaking)
- 라벨 다각도(최소 2개 측면)에서 촬영된 제품사진
- 대리점계약서 판매인증서 위촉장 견적송장 제조업체의 양해각서의 원본 스캔본
- 다음 서류 중 하나:
 - 제조자 GMP 인증서 혹은 동등한 서류, 유효한 위생증명서, 유효한 ISO 22000 인증서, 원산국에서 발행한 HACCP 인증서, 원산국에서 인증된 기관이나 상공회의소 혹은 원산국의 필리핀 영사관에서 발행한 자유판매증명서
- 필요 시 기술 혹은 영양연구 또는 보고서, 시장조사보고서, 검사증명서 등 입증 서류
- 표준과 규제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서

(2) 영업허가증(LTO)

- 통합신청서, 수수료 지급 증명서
- 업체 등록 증명서
 - 개인기업: 통상산업부(DTI)에 등록된 유효한 인증서
 - 법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유효등록증, 협력 회사의 경우 CAD 인증서
- 업체 소재지 증명서
 - 신청서에 작성된 시설 또는 주소를 지원자가 소유하지 않는 경우 사용 중인 시설의 공증된 임대계약서가 필요함
 - 신청서에 작성된 시설 또는 주소를 지원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양도권리증서 사본이 필요함
- 제품목록(브랜드 이름 목록과 제품 식별번호)
- 제조업체의 위치와 관련된 자료

5. 소요 기간 및 취득 비용

- 필리핀 소재의 제조, 수입, 유통 거래 등에 종사하는 업체가 신청하며 품목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저위험 식품은 약 3~4주가 소요되고, 중·고위험은 등록에 약 3~6개월이 소요됨
- 저위험 식품은 2,500필리핀 페소, 중·고위험 식품은 3,000필리핀 페소, 식품보조제는 1만 5,000필리핀 페소를 지불해야 함

6. 인증 기관

- 기관명: 식품의약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 홈페이지: www.fda.gov.ph
- 전화번호: +632 8 857-1900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 필수)

1. 개요

HACCP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와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s)의 영문 약자로, 해섭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함

식품의 제조, 가공, 공정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미생물 오염 등 위험을 방지하고 영업자에 의한 식품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위생관리체계임

한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⁴⁾에서 진행하며, 아래 절차 등은 동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함

HACCP은 크게 식품, 축산물, 사료공장 분야로 나뉘며, 식품에 식품 제조·가공업이 포함됨. EU는 공통 식품 위생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 제5조⁵⁾에서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의 모든 식품제조업체는 HACCP의 원칙에 따라 제품 및 공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2. 대상 품목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4조에 따르면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해야 하는 식품·축산물에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영업장 또는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생산 식품이 해당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도서지역의 영업자이거나 생산 식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영업자는 제외함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ttps://www.haccp.or.kr/>

5) (EC) No. 852/2004 제 5조 HACCP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04R0852-20210324>

- 1) 식품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운반급식), 식품제조·가공업(주류제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 식품냉동·냉장업 등

- 2) 축산품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가공·보관·운반·판매업
 - 가축사육업
 - 사료제조업 등

3. 인증 절차⁶⁾

1. HACCP 시스템 수립을 위한 생산, 기술, 설계, 연구 및 개발 등의 부서 대표자를 포함한 프로젝트팀 구성



2. 제품의 구성, 보관, 포장상태, 사용방법 등을 포함하는 제품기술서와 공정흐름도 작성



3. 생산공정 각 단계와 도출된 위해요소를 파악하여 위해요소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 결과의 심각성에 근거해서 위험을 평가



4. 식품안전을 위해 관리가 요구되는 중요 관리점(CCP:Critical Control Points)을 선정하여 식품안전을 위한 일반관리사항(POA)을 파악



5. 모든 위해요소의 관리가 기준치 설정대로 충분히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는 한계치 설정 및 모니터링

6) 식품제조업체 HACCP 적용절차
<https://fresh.haccp.or.kr/haccp/introduction/haccpIntroduction.do?tp=5>

4. 제출 서류

HACCP을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함

- HACCP 신청서
 - 식품인 경우 전품목 전업종 인증심사비용은 20만 원임
- 식품안전관리인증 계획서
 - 중요 관리점의 한계 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 조치 및 검증 방법을 기술한 자체계획서 등
- 영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등 사본
- 영업신고필증
 - 대표자, 업소명, 주소, 영업의 종류, 실제 운영 면적이 확인되어야 함
- HACCP 교육수료증
 - 경영인 과정(94시간 이상): 대표자
 - 종업원 과정(24시간 이상): 직원 중 1인
- 영업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일일 위생 점검기록, 위생교육 수료증 및 위생교육 기록
 - 종사자 건강검진 관련 서류
- 품목별 HACCP 관리 기준서에 따른 서류

5. 인증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HACCP 인증절차 및 검사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

한국의 HACCP은 식품, 축산물, 사료의 세 종류로 나뉘며 식품과 축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료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여 관리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원료 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임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가공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해당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임

6. 의무 적용 대상

1)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년 12월 1일부터 의무적용 식품이 확대됨. 기존에는 연매출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해왔으나, 12월 1일부터는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의무 적용 대상 식품에 해당하면 반드시 적용하여야 함

2) 대상 식품

-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어육소시지
-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어류·연체류: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이상)로 단순 절단, 가공하여 냉동한 식품(빵가루 입힘 포함)(절단하거나, 가공)
 - 조미가공품: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이상)로 하여 소스 등을 첨가, 조미하여 그대로 냉동하거나 가열·조리 등을 거쳐 냉동한 식품
-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 냉동식품(면류): 생면, 숙면, 건 면을 냉동한 식품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캔디류·빵류·떡류
- 빙과류 중 빙과
- 음료류(커피류는 제외한다)
- 레토르트식품
-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
 - 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
-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숙면·건면
 - 국수: 곡분 또는 전분, 전분질원료, 변성전분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
 - 냉면, 당면, 파스타, 수제비, 만두피, 분모자(중국 동북 지방의 당면)는 의무대상 아님
- 특수용도식품(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 소나 돼지의 창자에 여러 가지 재료를 소로 넣어 삶거나 찐 제품(순대국, 순대볶음 제품에 들어가는 순대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 의무적용에 해당)
- 식품 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3) 유예 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 적용 시행 시기를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1년 유예함. 다만, 의무 대상 식품 제조·가공업체로서 2020년 12월 1일부터 영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함

4) 행정처분

HACCP 인증 의무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됨

03 라벨링



표 9

식품에 대한 필리핀 라벨링 규정

세부 내용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표기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또는 필리핀어로 표기 - 수입식품의 경우, 외국어로 표기된 정보는 반드시 영문 번역이 필요함
		제품 이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본질을 나타내는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이름을 사용해 표시해야 함 - 식품 기준상 특정 식품에 대한 식품명이나 이름이 설정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함 - 소비자에게 혼동되지 않을 적절한 설명을 제공해야 함 - 소비자가 식품의 본질과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명과 함께 포장 유형이나 제품의 형태에 관한 문구를 추가해 사용할 수 있음 - 제품명은 포장의 주 디스플레이에 대문자와 굵은 글자로 영구적으로 표시되어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함
		상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된 상표(명)가 있다면 등록된 것과 같은 상표(명)를 라벨에 표시해야 함 - 시설에 등록된 상표명 또는 상표가 있는 경우, 해당 상표권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상표명 또는 상표를 해당 상표의 표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지만, 추가 가공을 할 경우 표시할 수 없음 - 사용된 브랜드명 또는 상표는 제품 이름과 함께 표시되어야 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 혼동 혹은 성격이나 본질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됨 - 동일 제품 분류의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이미 등록된 상표명 또는 AO No. 2005-0016 AO No. 2005-0016에 근거한 공적 도덕에 어긋나거나 외설적이거나 모욕적인 상표명과 같은 브랜드 이름은 허용되지 않음
		순 중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 내용물은 주요 디스플레이 패널 혹은 정보패널에 미터법과 같은 국제적 단위로 기재되어야 함 - 고체 식품의 경우, 무게로 표시함. 단, 해당 식품을 번호별로 판매할 때는 계산서를 작성해야 함

세부 사항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업체 이름과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제조업자, 재포장 업자, 포장 업자, 수입업자, 무역업자 및 판매업자의 이름과 주소는 현지에서 제조된 제품의 라벨에 표시해야 함 - 포장된 제품이 라벨에 표시된 사람 또는 회사에 의해 제조되지 않은 경우, 이름은 'Manufactured for' 또는 'Packed for'와 유사한 표현으로 기재되어야 함 -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자와 원산지 국가의 완전한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함
		제조 일자, 유통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 일자, 유통기한은 일, 월, 년 순으로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함 - 혼란을 피하고자 날짜와 연도는 숫자로 기재하며, 월은 문자로 기재해야 함(예: 01Jan12)
		로트(LOT) 식별 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기간 생산된 식품의 수량을 나타냄 - 외부 면적 10cm² 미만의 포장으로 판매되거나 즉각적인 포장으로 판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로트 식별 번호는 영구적으로 표시되어야 함
		식품 허가번호	필리핀 식약청에서 식품 허가로 부여받은 식품 허가번호를 포장 외관에 눈에 띄는 곳에 영구적으로 표시해야 함
		표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벨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영어 또는 필리핀어로 표기된 정확한 정보가 단일 스티커로 쉽게 제거할 수 없도록 단단하게 부착되어야 함 - 수입 물품은 필리핀 내 최종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위치에 알기 쉽게 필리핀 내 공식 언어(영어)로 표기해야 함 - 수입제품의 라벨링에는 원산지, 브랜드, 트레이드 마크, 물리적/화학적 구성 성분, 순 중량, 크기, 제조업자의 주소 등의 정보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위반 시 5,000페소의 벌금 및 6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됨 - FDA에서 허가한 기존의 라벨이 소진되거나 자주 변경되는 라벨링 규정으로 기존 라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영어 또는 필리핀어로 된 임시 라벨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스티커의 사용기한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포장된 농산물의 경우, 영양과 관련된 표시가 면제됨 - 식품의 올바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나 보관 조건이 있는 경우 그를 표기해야 함 - 일반적으로 미국의 식품 라벨링 기준이 필리핀에서 넓게 인정되며 수용되고 있음

04 위생요건

식품 첨가물 규정

필리핀 식약청에서는 ‘Bureau Circular No. 2006-016 || Updated List of Food Additive’ 규정을 통해 식품 첨가물의 목록과 그 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한편, 식약청은 규정 내 식품 분류 체계는 식품 첨가물 사용의 구분을 위한 도구로, 여기서 사용된 식품 기술어는 합법적인 제품명이나 라벨을 붙이는 데 사용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음

알레르겐

필리핀으로 식품 수출 시, 라벨링 규정에 따라 ‘알레르겐 정보: -이 포함됨’ 문구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에 대해 표시해야 함. 이 규정은 글루텐 함유 곡물, 갑각류, 달걀 등 8가지 알레르겐 성분을 정의하고 있으며, 그 외 필리핀 식약청에서 공지하는 성분을 포함하는 제품은 라벨에 그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

유해물질

KATI 농식품수출정보에서 아이스크림의 유해물질 관련 규정을 검색한 결과, 총 29건의 물질과 관련 기준이 검색됨



표 11

아이스크림에 적용되는 유해물질 기준

물질명	식품 유형	잔류허용기준	분류 PVO
Staphylococcus aureus	냉장 우유혼합물(밀크셰이크)	n=5, c=2, m=10, M=10 ²	O
Salmonella	냉장 우유혼합물(밀크셰이크)	n=5, c=0, m&M=Not Detected in 25g	O
Acrylonitrile	식품	0.02 mg/kg	O
cyflumetofen	식품	0.01 mg/kg (식품 포장 재료sms 1.0 mg/kg)	O
virginiamycin	식품	0.01 mg/kg	V
melamine	식품(유아용 조제식 제외)	2.5 mg/kg (노트 1, 2)	O
antibiotic	아이스크림	n=5, c=2, m=10, M=10 ²	V
Salmonella	아이스크림	n=5, c=0, m&M=Not Detected in 25g	O
Total aerobic microorganisms	아이스크림	n=5, c=2, m=5x10 ⁴ , M=10 ⁵	O
241 Americium(241Am)	모든 식품	10Bq/kg	R
Co-60 감마선(Cobalt 60)	모든 식품	1,000Bq/kg	R
134 Cesium(134 Cs)	모든 식품	1,000Bq/kg	R
144Cerium(144Ce)	모든 식품	1,000Bq/kg	R
14 Carbon(14C)	모든 식품	10,000Bq/kg	R
137 Cesium(137Cs)	모든 식품	1,000Bq/kg	R
3 Hydrogen(3H)	모든 식품	10,000Bq/kg	R
129 Iodine(129I)	모든 식품	100Bq/kg	R
192Ir(192 Iridium)	모든 식품	1,000Bq/kg	R
238 Plutonium(238 Pu)	모든 식품	10Bq/kg	R
239 Plutonium(239 Pu)	모든 식품	10Bq/kg	R
240 Plutonium(240 Pu)	모든 식품	10Bq/kg	R
Radioactivity 131 I	모든 식품	100Bq/kg	R

*유해 물질 분류: 방사능물질(R): Radioactive material, 동물용의약품(V): Veterinary medicine, 기타(O): Others

자료: 농식품수출정보(KATI)

V

시사점



01

수출 확대 방안

시장 여건 및 수출 전략

필리핀 아이스크림 및 냉동 디저트 시장 규모는 2016~2019년 꾸준히 증가하던 추세에서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감하였으나, 2021년에는 회복세로 돌아섬

필리핀 아이스크림 시장은 (큰 통에 담겨있어 집으로 가져가 나눠 먹는 종류의 아이스크림인) 테이크아웃 아이스크림 비중이 크지만, (스틱바, 콘, 컵 형태의 아이스크림으로 상점에서 구매 후 즉시 섭취가 가능한 작은 크기의 아이스크림인) 임펄스 아이스크림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임

필리핀 아이스크림 수입 규모는 2017~2021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45.7% 성장했으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도 동기간 연평균 30.9% 성장함. 필리핀 소비자의 수입 아이스크림, 한국 아이스크림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현재 필리핀 냉동 디저트 기업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유니레버와 네슬레가 87%를 차지할 정도로 과점 시장으로 보이지만, 테이크아웃 아이스크림의 거의 대부분 제품을 해당 기업에서 출시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됨

앞선 내용에서도 필리핀에서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으로 선정된 제품, 대중적인 맛을 지닌 제품들도 모두 테이크아웃 아이스크림 종류인 것을 고려하면, 테이크아웃 아이스크림 시장은 이미 유명 기업 브랜드 제품들로 포화 상태일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한국 아이스크림은 임펄스 아이스크림 형태의 상품으로 차별성을 가져야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바류 제품이 수출 상품으로 적절함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의 환경적 조건과 더불어 K-푸드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한국 아이스크림 제품 진출에 용이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음. 한국 아이스크림은 대형 글로벌 브랜드에서 제조한 아이스크림과는 다르게 특색있고 신선한 제품이 많음. 형태 및 디자인 측면, 먹는 방법 측면, 식감 및 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필리핀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음

또한, 한국에서 아이스크림을 활용하여 너무도 다양하게 디저트 메뉴를 만든다는 점도 꼭 활용해야 할 홍보 포인트임. 한국 아이스크림을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 레시피를 이미지 또는 영상으로 제작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유통채널은 기존 아이스크림 주요 채널인 현대식 슈퍼마켓과 편의점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한국 아이스크림 가격과 맛, 신선함 등을 고려했을 때 필리핀 소비자의 남녀노소 연령층을 불문하고 매우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어필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바임

참고문헌



□ 참고 사이트

1. Euromonitor International
2. ITC World Trademap
3. 농식품수출정보(KATI)
4. K-Stat
5. 필리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6. Selecta
7. Lazada

□ 참고 자료

1. KATI, [필리핀] 식품라벨링 규정
2.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1 해외시장 맞춤형조사 필리핀", 2022.01

수출기업 맞춤형 조사

발행 겸 편집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발행 일자 2022.12

•본 보고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